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1월 29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9년 11월 22일
- 나. 제안자 : 최동철 의원 외 8명
-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8일
- 라. 상정일자 :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9. 11. 29.)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충숙 위원)

□ 제안이유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로 변경 (안 제4조)
- 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5일로 변경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11.22.~11.27.)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정우숙)

가. 개정 취지

본 개정안은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안 제4조제1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로 변경
- 2) [안 제4조제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5일로 변경

다. 종합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결산의 심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